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17 발의연월일: 2020. 11. 11.

발 의 자: 송언석·임호선·송기헌

신정훈 · 위성곤 · 정진석

안호영 · 박성민 · 태영호

이광재 · 허은아 · 배현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시키고,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지역인재 채용 비율 준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었음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전공공기관들의 지역경제 기여도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이전공공기관의 부설기관 또는 분원의 상당수가 이전지역 외의 지역에 산재하고 있음에 따라 업무의 비효율성 등으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의 부설기관 또는 분원 등을 혁신도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이전 효과의 극대화를 통한 혁신도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법률 제 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조직을"을 "조직과 이전공공기관의 부설기관 또는 분원(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의 부설기관 또는 분원을 포함한다) 등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	제4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
획의 수립) ① (생 략)	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	②
이전계획은 수도권에 있는 이	
전공공기관의 본사 또는 주사	
무소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	
한 <u>조직을</u> 지방으로 이전하는	조직과 이전공공기관의 부설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	기관 또는 분원(수도권이 아닌
다.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의 부
	설기관 또는 분원을 포함한다)
	드 0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